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'6+6 부모육아휴직제'

2024.06.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

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.



1350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.

6+6 부모육아휴직제

▲ 지원대상

- ㆍ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- ㆍ「고용보험법」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
- ※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

▲ 지원내용

ㆍ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지원

육아휴직기간(부모공통)	지급 상한액	지급기준
母 6개월 + 父 6개월	각각 월 450만 원	통상임금의 100%
母 5개월 + 父 5개월	각각 월 400만 원	
母 4개월 + 父 4개월	각각 월 350만 원	
母 3개월 + 父 3개월	각각 월 300만 원	
母 2개월 + 父 2개월	각각 월 250만 원	
母 1개월 + 父 1개월	각각 월 200만 원	

- ㆍ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
- · 이미 '3+3 부모육아휴직제'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,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'6+6 부모육아휴직제'가 적용됨
- ·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

▲ 지원시기

·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▲ 신청방법

- · 온라인 신청 : 고용24
- ㆍ 방문 또는 우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
▲ 문의

·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1350)